

제주 광역의원 선거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

제주녹색당공동운영위원장 김순애

제36조(도의회위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위원 정수(교육의원 5명 포함)는 45명 이내 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 도의회위원 지역선거구는 인구 · 행정구역 · 지세 · 교통과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 정, 그 도의회위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8조(도의회위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 도의회위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위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원의 정수는 45명으로 한다.
- 지역선거구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정수는 32명, 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제안

1. 100%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
2. 권역별로 상이한 명부를 제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3. 도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권역 의석수 확정.
4. 개방형 명부 채택
5. 10% 내외는 제주도 정당지지율과 의석수 불일치를 보정하는 보정의석
6. 후보당선은 '쿼터제 방식' 적용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면실시

- 2020년 총선에서는 누더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 산출하지만 의석수의 50%만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

예) 녹색당 10%득표-> 300석의 10%인 30석 배분해야 하지만 반인 15석만 배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만 30석 연동형 캡 적용

→ 비례의석 47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비례의석배분 방식 적용

- 2020년 총선 결과: 여전한 불비례성, 위성정당 허용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결과		
정당	정당득표율	비례의석	총 의석	총 의석률
새누리당	33.5	6	111	37.00
더불어민주당	25.54	4	114	38.00
국민의당	26.74	22	47	15.67
정의당	7.23	15	17	5.67
무소속	0	11		0.00

개방형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전면실시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는 위성정당 출현 막을 수 없음

소선거구제 폐지해야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도의회 의석 100%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시범 실시

개방형 비례대표제: **정당과 후보를 동시에 선택**

한 장의 투표용지에 **정당에 한 표**, 정당 이름 아래 **후보자에게 한 표**

지지정당이 있어도 후보까지 모르면, 정당에만 기표하고 후보자를 잘 알면 후보자
도 선택해 기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당선자 수가 정해지는데 **그 정당에서 가장 많은 득표
를 얻은 순서대로 당선**

유권자의 선택권 확장,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에 기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 전체 득표율이 아닌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권역 의석수 확정**.

권역별 의석 할당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①항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 **봉쇄조항은 적용하지 않아야 함**.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1개 권역(제주 전체) VS **3개 권역**(제주시 갑, 을, 서귀포) VS

2개 권역(제주시, 서귀포)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주도 전체를 1개 권역으로 하고 현재 45명 의원 수 유지 가정

- 5% 득표 봉쇄 조항
- 유권자 측면에서는 후보가 너무 많아서 **후보 선택에 어려움**
- 후보 입장에서는 **제주도 전체 대상 선거운동**
- 제주도 전체에 **이름이 알려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
- 지연이나 혈연 등에 영향을 덜 받고, 후보 선택 범위 확대, 공약 범위 확대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민주당()	국민의 힘()	민생당()	우리공화당()	기본소득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정당별로 정당이 선정한 순서대로 최대 45명 후보 이름 나열
 유권자들은 원하는 정당과 후보에 동시에 표시
 원하는 후보가 없으면 정당에만 표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주시, 서귀포시 2개 권역으로 하고 현재 45명 의원 수 유지 가정

- 제주시와 서귀포시 **다른 명부 제출**
- 인구 수에 따라 의원 수 배정(제주시 29명, 서귀포시 11명)
- 의석 확보를 위해 **제주시는 최소 3.4%, 서귀포시는 9% 정당 지지율** 필요
- 5명은 **보정의석**(당선자수 합과 제주도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의 불일치 보정)
- 녹색당이 제주시 3.3%, 서귀포시 8.5%를 얻어서 권역 의석확보 실패, 하지만 제주도 전체 득표율 2.5%인 경우 보정의석에서 1석 확보
- 지역에서 알려진 이에게 다소 유리, 선거 운동 지역 축소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민주당()	국민의 힘()	민생당()	우리공화당()	기본소득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정당별로 정당이 선정한 순서대로 제주시는 최대 29명, 서귀포시 최대 11명 후보 이름 나열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주시, 서귀포시 3개 권역으로 하고 현재 45명 의원 수 유지 가정

- 제주시 갑, 을 서귀포시 **다른 명부 제출**
- 인구 수에 따라 의원 수 배정(제주시갑 15명, 제주시 을 14명, 서귀포시 11명)
- 의석 확보 위해 **제주시 갑 6.7%, 제주시 을 7.1% 서귀포시 9% 정당 지지율** 필요
- 5명은 **보정의석**(당선자수 합과 제주도 정당 지지율에 따른 의석수와의 불일치 보정)
- 지역에서 알려진 이에게 다소 유리, 선거 운동 지역 축소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민주당()	국민의 힘()	민생당()	우리공화당()	기본소득당()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 정당별로 정당이 선정한 순서대로
제주시 갑 최대 15명, 제주시 을 14명, 서귀포시 최대 11명 후보 이름 나열

쿼터제 & 보정의석

후보자 득표순으로 당선자 결정하는 전면 개방형의 폐해

→ 명망가 중심 당선

→ 상대적으로 정치 활동 기회 적은 '여성의 정치적 진출 약화'

쿼터 적용: 후보 당선은 권역 내 자기정당 득표 수의 5% 이상 득표해야
*정당 득표율로 10명의 당선자 확보했지만 쿼터를 넘은 이가 5명이면 나머지 5명은 정당의 후보 기준에 따라 우선권 부여

보정의석 당선자: 권역에서 낙선한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순

보정의석 할당의 봉쇄조항 1% - 사표 방지,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
도모